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53441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이정석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종민

변론 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3. 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기업은행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이하 'D')를 주채무자로, E의 대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1. 11. 25.경 실행한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채권의 전전양수인인 F 유한회사는 C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4936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0. C이 F 유한회사에 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3. 10. 확정되었다.

2) 그 후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G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H(이하 '망인')는 2022. 1. 1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I, 피고, C, J, K이 있었다.

2) I, 피고, C, J, K은 2023. 2. 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1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2023.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9,99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9,0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5년 7월경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C의 특별수익으로서 C은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C에게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①주장'), 피고는 2013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2. 10. 14.까지 망인을 포함한 부모님을 전적으로 홀로 부양하며 모든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는데 피고의 이와 같은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협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이하 '②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15년 7월경 당시 C이 사내이사로 있던 D에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D가 사실상 C의 개인회사로서 D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C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경 D 지분의 30%는 M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100,000,000원이 지급된 경위나 목적 및 사용처 등도 불분명하다).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자신 내지 남편 N 명의로 망인 부부를 위해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약 7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단지 망인 부부 근처에서 살았을 뿐 동거하면서 망인을 직접 보살핀 것은 아니고 그에 준하는 부양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 오히려 C이 2015년경부터 망인 부부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피고는 C의 사업실패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형식적 주소이전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 피고가 망인 부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그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 내지 전적인 부양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㉔ 피고의 형제들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7. 22.에서야 작성된 것이고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피고의 망인 부양을 근거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기여분 협의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상속재산분할협정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 당시 피고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전제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①주장, ②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 이후인 2023.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9,99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가 14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경로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금액인 120,000,000원을 기준으로 채무자 C의 상속지분 1/5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소액일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3. 2. 8.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가운데 적은 금액인 위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상빈

별지